2013학년도 제2차 장학제도 개선 안내

장학팀 / 2013. 5. 13. (월)

학 부

I.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

소득분위	기본 지급금 (단위: 만원)	선발 기준
0-1분위	30	1) 한국장학재단 통보자료 기준 소득 8분위 이하
2-3분위	20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4-6분위	15	신입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장애인 :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7-8분위	10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백분율 80점(4.3 만점 기준 환산 평점 2.4) 이상

Ⅱ. 고시장학금 및 고시반지원장학금

가. 개정사유 및 개요: 고시반 지도교수간담회 (2013.4.11.)에서 의견수렴하여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외무고 시의 정확한 명칭을 5급공채(행정,기술,외무)로 변경하고 고시장학금C는 다양한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특정 자격증에 대한 장학금 수혜 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폐지하고 고시반지원장학금은 지급기간을 1차 합격 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단, 8학기까지)으로 명확히 하고 기숙사 운영비(관리비)를 기숙사비로 변경함.

나. 선발 및 지급기준 개정

장학금명	구분	기존	개정	변경 사유	
고시장학금A	선발 및 지급기준	사법 · <u>행정 · 외무고시</u> ,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자	사법 · <u>5급공채(행정 · 기술 · 외무)</u> ,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자	행정 · 외무고시 → 5급 공채(행정 · 기술 · 외무)	
	지급내역	2차 합격(합격일 학기 포함) 후, 등록금 전액	2차 합격(합격일 학기 포함) 후, 등록금 전액	로 명칭변경	
고시장학금8	선발 및 지급기준	사법 · <u>행정 · 외무고시</u> ,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사법 · 5급공채(행정 · 기술 · 외무) ,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행정 · 외무고시 → 5급 공채(행정 · 기술 · 외무)	
	지급내역	1차 합격(합격일 학기 포함) 후,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1차 합격(합격일 학기 포함) 후,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로 명칭변경	
7 11 7 7 7	선발 및 지급기준	장학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직 자격증 취득자(AICPA, CFA, 보험계리사) 또는 언론사준비반	- 삭제 (폐지)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특정 자격증에	
<u>고시장학금C</u> 	지급내역	자격증 최종 합격(합격일 학기 포함)자 및 언론사 준비반 지도교수 추천 언론사 준비반1명, 2개 학기 등록금 반액	<u> 즉시 (폐시<i>)</i></u>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기 어려움.	
고시반지원 장학금	선발 및 지급기준	사법· <u>행정</u>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등의 1차 시험합격자 또는 언론사준비반으로, 해당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으로 기숙사 입실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사법·5급공채(행정·기술·외무), 공인회계사 등의 1차 시험합격자 또는 언론사준비반으로, 해당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으로 기숙사 입실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행정 · 외무고시 → 5급 공채(행정 · 기술 · 외무) 로 명칭변경 지급기간을 1차 합격 후	
	지급내역	1차 합격(합격일 학기포함) 자 및 언론사 준비반 지도교수 추천 언론사 준비반 1명, 2개 학기 기숙사 운영비(관리비)	1차 합격(합격일 학기포함) 자 및 언론사 준비반 지도교수 추천 언론사 준비반 1명, 1차 합격 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단, 8학기까지) 기숙사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단, 8학기까지)로 변경 하고 기숙사 운영비(관 리비)를 기숙사비로 변 경함.	

다. 시행시기 : 2013년 3월부터 적용

皿. 숙명가족장학금

가. 개요: 신입생 첫 학기에 친자매가 본교 휴학상태인 경우가 발생하여 친자매가 휴학 중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함.

나. 선발 및 지급기준 개정

장학금명	지급	기그네어	нlэ	
3453	기존	개정	지급내역	비고
	친자매가 본교 학부에 <u>재학 중인</u> 신입생	친자매가 본교 학부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신입학 첫 학기	등록금
숙명가족		신입생	에 500,000원	0 1 -
	친자매가 본교 학부에 동시에 입학한 신입생	친자매가 본교 학부에 동시에 입학한 신입생	지급	초과·중복

다. 시행시기: 2013년 3월부터 적용.

IV. 숙명창조인재장학금(자비교환)과 미래에셋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중복지원

가. 개요: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이 숙명창조인재장학금(자비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하였으나 [별표 2] 숙명창조인재장학금(자비교환)에는 중복안됨으로 명기되어 있어 현재 운영상황을 반영하고 2013학년도 1학기 3월 선발자부터는 숙명창조인재장학금(자비교환)은 등록금 범위 내의 중복수혜 허용으로 변경하여 운영함.

나. 선발 및 지급기준 변경

장학금명	구분	기존	개정	변경사유
숙명창조인재장학금 (자비교환)	중복수혜	<u>중복 안됨</u>	 2013학년도 이전 선발자 : 등록금 초과 중복수혜 2013학년도 3월 선발자부터 적용 : 등록금 범위내 중복지원 	기존 운영상황을 일 관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2013학년도 이 전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초과 중복지 원하며 2013학년도 3 월 선발자부터는 등 록금 범위내 중복지 원으로 변경함.

V. 연구인턴장학금

가.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장학금명	선발 및 지급 기준	지급 내역	비고
연구인턴	• 2학년이상 재학생 중 외부연구비 수혜 교수가 추천한 자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추천인원: 교수 1인당 재학생 1명) • 연간 최대 6개월 지원	• 외부연구비(50%) 및 교내대응금액 (50%) • 일정액	등록금 초과 중복수혜

나. 세부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시행함.

- -. **학기말, 후불 지급**(다음 학기 등록금 보조 개념으로 적용)
- -. 추천교수가 선발하고 연구활동 후 장학팀에서 지급함.
- -. 추천서[별도 서식]와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연구지원팀에서 외부연구비 대응 확인 날인 받음.
- -. 교내 대응 지급액(일정액): 월 20만원. (최소 월 30시간 이상 연구활동)
- -. 외부연구비 대응은 단일과제에 한정함.

VI. 산학연수장학금

가. 개요: 2004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월 40만원씩 4개월 지원되었고 2009년 1학기부터는 2개월 지원으로 변경되어 교비에서 2개월분에 해당되는 장학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음. 따라서 2009년도부터 지원되어온 교비 장학금을 반영함.

나. 목적 : 숙명인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다. 지급기준(안)

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산학연수	■ 5학기 이상 외부기업(관)에서 풀타임(1일 8시간) 인턴하는 학생에게 지급함. ■ 연간 2개월 ~ 최대 4개월 지원	■ 일정액	등록금 초과 중복수혜

라. 세부 기준

- -. 기업(관) 인턴 근무 후 매 월 취업지원팀에서 신청하고 장학팀에서 지급함.
- -. 월 40만원 일정액 지급 (하루 8시간 만근 시)
- -. 기업(관)에서 출석부를 받아 출석 일에 따라 일할 계산

마. 시행시기 : 2013년 3월부터 적용

WI. 숙명창조인재장학금(해외인턴십-장기)

가. 개정사유 : 재학생 자비교환 장학금 지급비율 조정(등록금의 80% → 60%)에 따라 재학생 해외인턴십 장학금 지급비율 또한 하향 조정 하여 한정된 장학예산 범위에서 적정규모의 장학수혜자 수를 확보하고자 함.

나. 숙명창조인재장학금(해외인턴십-장기) 지급기준 변경

장학금명	구분	기존	개정
	선발 및 지급기준	학점/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	좌동
숙명창조인재장학금	지급내역	등록금의 80%	등록금의 60%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등록금의 80%

다. 시행시기: 2013년 3월 선발자부터 적용

Ⅷ. 숙명창조인재장학금(Honors Program) 명칭 변경

가. 개정내용

구분	구분	기존	개정	비고(개정사유)
숙명창조인재장학금	명칭	<u>Honors Program</u>	Global Best Program	명칭을 변경함.

나. 시행시기 : 2013년 3월부터 적용

IX. 글로벌인재양성기금장학금

가. 개정내용

구분	구분	기존	개정	비고(개정사유)
글로벌인재양성기금장학금	선발 및 지급기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발전기 금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교내업무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베트남)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본교 재학생 (외국인은 휴학생 포함)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장학수혜 대상자 및 지급 대상영역 확대 함.

나. 시행시기: 2013년 3월부터 적용

X. [청파기금] 숙명학군단 장학금 학기초과자 지급에 관한 건

-.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및 학군사관후보생 제53기 모집계획에 따라 53기 후보생으로 선발된 3학년 편입생에 대해 3학년 편입생임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5년차(9학기, 10학기)에 학군단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함.

XI. 휴학생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 -. 장학금 규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장학금의 경우 휴학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허용함.
 - 가. 삼성드림클래스장학금
 - 나. 신라문화장학재단 장학금
 - 다. 글로벌인재양성기금 장학금
 - **라. 일반기탁장학금과 외부재단(기관) 장학금**은 기탁자 또는 외부재단(기관) 지침에 따라 휴학생 지급 허용함.

Ⅵ. 외국인학생 조교장학금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사항

-. [청파기금] 세계지역핵심인재장학금(외국인장학금 포함)과 조교 장학금(전액장학금) 이중 수혜시 2013년 1학기까지 등록금을 초과하여 각각 장학금을 지급함. 단,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사전에 충분한 공지를 하고, 등록금 전액 조교장학금은 이중수혜를 금지하고 그 외는 등록금 범위내 중복수혜 받도록 변경함.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 [별표 3] 참조)

대 학 원

I. 명재대학원 장학금(구 우수동문장학금)

가. 개정내용

장학금명	기존	개정	비고
명재대학원장학금 (구 우수동문장학금)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되는 자 - 학부우수동문 - 석사우수동문(본교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하고 본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 조교로 근무할 수 있는 자):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2013학년 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과정을 졸업하고 본교 박사학위과정에	* <u>'일반대학원'</u> 문구추가(지 원대상 명확화)

나. 시행시기 :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2013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ш. 연구지원장학금

가. 세부기준 :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지원기준을 확정하여 시행함.

구분		지급 기준
7101	국내전문학술지	<u>20만원</u>
지원 종류	SCIE	<u>40만원</u>
011	SCI, SSCI, AHCI	<u>60만원</u>
저자 기준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논문

구분	지급 기준
지원 대상자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석·박사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생에 한함.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서 및 결과물(지도교수 확인란에 지도교수 서명 날인 받음) 논문 발간후 6개월 이내 신청 발행된 논문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게재 승인된 논문에 대해서도 신청가능.

나. 시행시기 :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Ⅲ. 공모전장학금(신설)

- 가, 개요 및 신설 사유: 2013학년도 제2차 장학위원회(2013. 5.2)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임. 현재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공모전 장학금이 학부생 대상으로만 되어 있고 대학원생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기에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원생에게 확대하여 공모전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
- 나. 목적: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대학원생에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모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다. 지급기준

장학금명	선발 및 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공모전장학금	■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대학원생을 심사하여 지급함.	■ 일정액	등록금 초과 중복수혜

라, 세부 기준

- -. 교내 주관대회는 제외함(단, 교내-외부기관 공동 주최는 가능함)
- -. 참가증. 해외봉사활동 표창 및 임명. 과정 수료증. 선발 등은 제외함
- -. 기타 세부기준은 학부 공모전 장학금 기준에 따름.

※ [별표 1], [별표 2], [별표 3] 각 장학금별 중복수혜 여부와 중복수혜 한도 명시

장학금 규정 제13조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5조에 의거하여 장학팀에서는 장학금 중복수혜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각 장학금별로 중복수혜 여부와 중복수혜누계한도를 명확하게 명시함. ([별표 1],[별표 2],[별표 3] 참조)

<장학금 중복수혜 원칙>

- ① 등록금 전액 장학금은 타 장학금(학비지원)과 중복수혜를 금지한다.
- ② ①항의 등록금 전액 장학금 외의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를 허용한다.
- ③ 근로, 생활비 지원, 기숙사비, 활동지원, 해외교류 및 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은 장학금 중복수혜와 무관하게 추가로 지원한다.
- ④ 외부장학금은 외부기관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